

공주민제 거버넌스에서의 상한

반자반노 이상연

1. 정의

“상한”은 공주민제(DCA)형 거버넌스에서 특정 개인·집단·기관이 **결정권(의결권/위임표)**이나 **이익추출권(보상·특수거래·수수료)**을 일정 수준 이상 독점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 내장하는 **헌정적 캡(cap)**이다.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포획(capture)**을 막기 위해 통제력의 최대치에 천장을 씌우는 장치다.

상한은 “누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결정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는 장치다.

상한은 크게 다섯 군데에 걸린다.

1) 의결권 상한: “주식이 아니라 통제력에 상한”

의결권 상한은 단일 주체가 특정 의사결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최대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국민지분(Commons Shares)이나 국부펀드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있을 때, 어떤 운용사·대리인·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비중을 X%로 제한한다. 초과분은 자동 분산(다른 대리인에게 재배분), 자동 중립(기권 처리), 또는 사전에 정한 독립기구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드 캡(절대 상한)이 너무 경직될 수 있으니, 의결권 효력이 커질수록 추가 지분의 효력을 줄이는 강쇠 구조도 쓴다. 예컨대 의결권을 보유지분의 제곱근($\sqrt{}$)이나 로그(log)로 변환하면, 지분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덜 늘어나 “통제력 독점”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2) 위임(Liquid Proxy) 상한: “대표가 너무 커지지 못하게”

리퀴드 프록시는 유권자가 표를 대리인에게 위임했다가 언제든 회수하는 구조다. 이때 위임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포획 통로가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임표 총량에 상한(Y%)을 둔다. 초과분은 차순위 선호 대리인에게 분산하거나, 지역·직군별로 분산하거나, 자동 기본대리(공익·독립기구)로 분산한다.

또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체인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진다. 그래서 재위임을 1단계로 제한하거나, 재위임 누적표에 별도 상한을 둔다.

3) 소유집중 상한: “집중 자체를 막거나, 집중의 효력을 막기”

상한은 보유 자체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 보유는 허용하되, 그 보유가 통제력으로 환산되는 부분에 상한을 둘 수 있다. 특히 시민지분은 배당권 중심의 시민권적 권리 성격이 강하니, 양도·담보·현금화에 제한을 걸어 투기적 집중을 줄인다. 상속은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 방식은 분산/감사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또 포획은 개인 1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계열·우호지분** 둑음으로 발생하니, 상한은 반드시 합산(록스루) 적용한다. 개인만 분리해 보면 상한이 무력화된다.

4) 지배구조 상한: “결정 통로(자리)와 시간에 상한”

이사회·핵심위원회(감사·보상·리스크)의 장악을 막기 위해 동일 이해집단이 차지할 수 있는 좌석 비율을 제한한다. 감사·보상위원회는 독립위원 과반을 강제하고 이해상충자는 참여를 금지하는 식으로 설계한다.

권력은 ‘비중’만큼이나 ‘시간’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임기·연임 상한, 쿨링오프(휴지기간) 규정을 둔다. 유능하더라도 장기집권이 되면 결국 네트워크·정보·인사권으로 포획이 생긴다.

5) 추출 상한: “통제력으로 이익을 뽑아가는 경로에 상한”

의결권 상한만 두면 통제력이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빼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 상한, 독립 승인 의무, 수수료/성과보상의 장기연동, 환수(clawback) 규정, 외부 평가 및 공개 같은 “추출 경로 차단”을 상한으로 함께 둔다.

2. 상한 수치는 어떻게 정하나

상한(X, Y)은 감으로 정하면 실패한다. 기준은 네 가지다.

1. 참여자 규모(N): N이 클수록 개인·대리인 상한은 더 낮게
2. 위임 강도: 리퀴드 프록시 비중이 클수록 대리인 상한은 더 낮게
3. 포획 리스크 허용치: 포획을 더 두려워하면 더 낮게
4. 운영 현실: 너무 낮으면 의사결정이 마비되니 하드 캡 + 감소를 혼합하는 편이 안정적

실무적으로는 “대리인 수임 상한(0.5~2% 같은 낮은 캡) + 의결권 감소 + 초과분 자동분산로직” 조합이 많이 쓰인다.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초과분 처리 로직**(분산/기권/독립기구 이관)이 같이 설계되어야 상한이 제도적으로 살아난다는 점이다.
